

"역직구는 쉽게, 우회수출은 막는다"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발표

[이주의 초점]

수출 문턱 낮추고 원산지·마약·기술유출 단속은
튼튼하게 (4p)

[품목분류 동향]

AI 시대의 혁명 '광 네트워크' 연관 물품의 품목분류
해설 (31p)

[오피니언: 미국 통관]

2026.7.24. 임시 글로벌 관세 종료로 새 국면 맞는
미국 관세정책...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13p)

[위클리 뉴스]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안 7월 16일 시행...
위생용품·의료기기·보호장비 수입요건 강화
콩나물용 콩 저율관세할당물량 1만톤 추가...
5% 관세 적용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에 가리비
선정 (8p)

[판례 동향]

잠정가격신고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23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 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7월 20일(통권 제2187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발표
“역직구·첨단산업 지원에 승부수”

관세행정실무해설

- 20** 질의응답사례
맥주 해외 직구 시 관세

08 Weekly News

판례동향

- 23** 관세판례해설
잠정가격신고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오피니언

- 13** 시선, 미국통관
이정운(Pierce Lee)
미국 변호사(Crowell & Moring LLP)
2026.7.24. 임시 글로벌 관세도 만료...
새로운 국면 맞는 미국 관세정책

품목분류동향

- 31** 품목분류해설
AI 시대의 혁명 '광 네트워크'의 이해와
연관 물품의 품목분류
-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발표 “역직구·첨단산업 지원에 승부수”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 마련, 원산지 단속, AI 국경관리로 마약·우회수출 차단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마약·총기 밀반입, 우회수출,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 초국가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초국가 범죄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수출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민생도 지원

관세청은 개인과 영세사업자, 창업기업, 내수기업까지 누구나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상특송 협력을 확대해 통관·물류비용을 줄이고, 창업기업에는 일대일 맞춤형 수출 코칭을 제공한다. 중고차와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은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개선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중고차 수출 시 현재는 완성차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로 이를 대체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이력정보와 연계해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내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맞춘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지역별 피해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 집중 단속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를 시행하고, 단속 범위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뿐 아니라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입가격의 저가신고로 세액을 탈루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협력해 K-브랜드 위조상품의 현지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특별 합동단속도 전개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 반도체와 새만금 로봇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보세제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으로 기업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과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신속한 반출과 유통을 유도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FTA 원산지증명 발급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 고환율 장기화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외환시장 안정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37

K-제조업 보호

국산둔갑

 153건, 1,477억 원

K-브랜드 침해

 1,465건, 1만4천 점

완제품 수입



국내 단순 가공



기술어린 운동장, 국내 제조업 고사 위기
~~국산 둔갑~~ ~~짜통~~ ~~탈세~~



국산 둔갑



국산 가장 수출



출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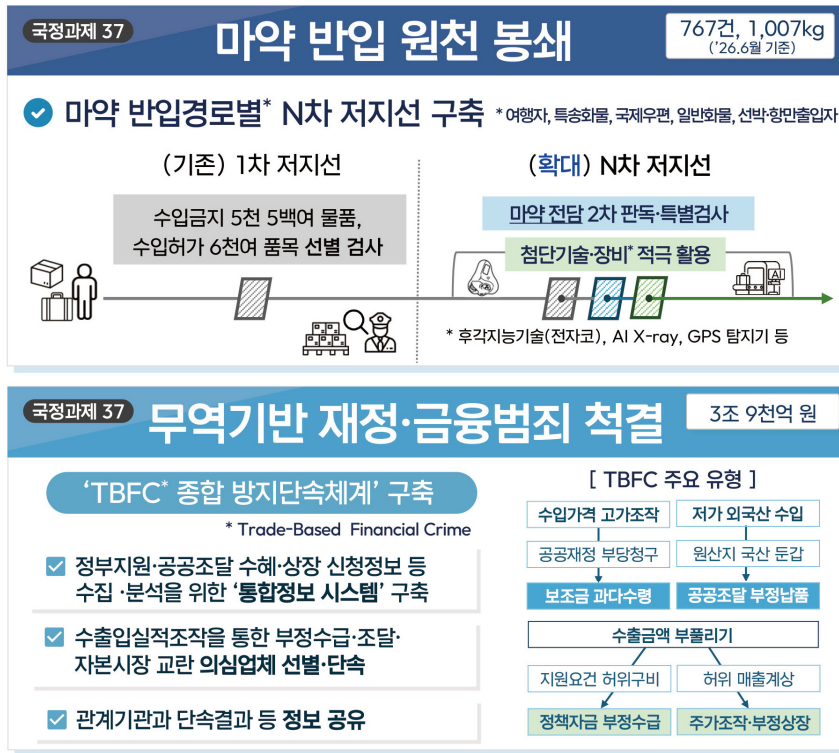
■ 마약·우회수출·무역범죄 전방위 차단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서 관세청은 올해 1~6월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kg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9,000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물자 불법유통과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도 적발했다.

하반기에도 국경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과 일반화물뿐 아니라 특송화물, 여행자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엑스레이(X-ray) 관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적발정보와 국제동향을 통합한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도 마련해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겨냥한다. 국제합동단속 대상국은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첨단 전략물자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된다. 수출입 신고자료와 국세청 세적자료를 연계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품목별 우회수출 위험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확대해 첨단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주식시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안 7월 16일 시행··· 위생용품·의료기기·보호장비 수입요건 강화

앞으로 위생용품이나 의료기기, 보호장비와 같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 위협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를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이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분류체계(HSK) 변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해요소를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고시 시행일 기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반영됐으며, 비소 등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다.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미구비한 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 등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을 강화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개 품목과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을 신규 지정했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으며,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기업이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콩나물용 콩 저율관세할당물량 1만톤 추가··· 5% 관세 적용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만톤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3일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콩나물 재배용 콩의 2026년 TRQ는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늘어난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콩나물 재배용 콩 1만 7,450톤에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당초 물량이 지난 6월 말 모두 소진되고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증량을 결정했다.

기존 물량 1만 7,450톤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설정됐으며, 추가 물량 1만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

	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
당초	1만 7,450톤	2026년 1~12월	6월 말 물량소진
추가	1만톤	2026년 8~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7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서준식 기자 |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접불금 지원 품목에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8월 13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법」)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등 「FTA농어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 김성은 기자 |

캐나다, 육류 함유된 국산 펫푸드 수입 허용... 검역 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육류 성분이 포함된 펫푸드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약 7년에 걸친 협상 끝에 수출작업장 승인과 위생조건,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합의하면서 국내 펫푸드의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7월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허용 절차를 요청한 이후 수입위험평가와 제조업체 실시간 영상 실사 등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쳤다. 올해 6월 국내 수출작업장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양국은 검역·위생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닭가슴살, 소의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이 캐나다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수출작업장 1개소가 캐나다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해당 작업장은 기존에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수출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북미 시장까지 수출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양국은 원료별 특성을 반영한 열처리 기준과 미생물 위생조건도 확정했다. 가금육 성분은 중심부 온도 70℃ 이상에서 3.6초 이상, 우육 성분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미생물 검사는 수출용 생산 단위에서 무작위로 5개 표본을 뽑아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는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n=5)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캐나다 수출을 추진하는 다른 국내 펫푸드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위생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료 유래와 도축검사 실시 여부, 열처리 공정 준수 여부 등 캐나다가 요구하는 검역·위생 요건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확인하고 공식 보증하게 된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올해 말 캐나다로 첫 수출을 목표로 현지 유통업체들과 제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수출업체와 협력해 현장 검역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펫푸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ㅣ 김성은 기자 ㅣ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기업 180개사 모집...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격인증을 획득할 때 인증과 시험, 컨설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비와 시험비, 상담·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인증은 유럽연합(EU)의 통합규격인증(CE, Conformité Européene)을 비롯해 미국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허가(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등 총 572개다. 공고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모집을 통해 약 180개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들어간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60%, 300억원 이상인 기업은 50%의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 지급된다.

기업은 연간 최대 4건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신청 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인 소액인증은 신청 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직접수출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 외에도 EU CE,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등 9개 주요 해외인증을 대상으로 한 전략지원도 운영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화장품 관련 인증과 유럽·영국의 화장품 인증 제도 등도 전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지원 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전략지원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 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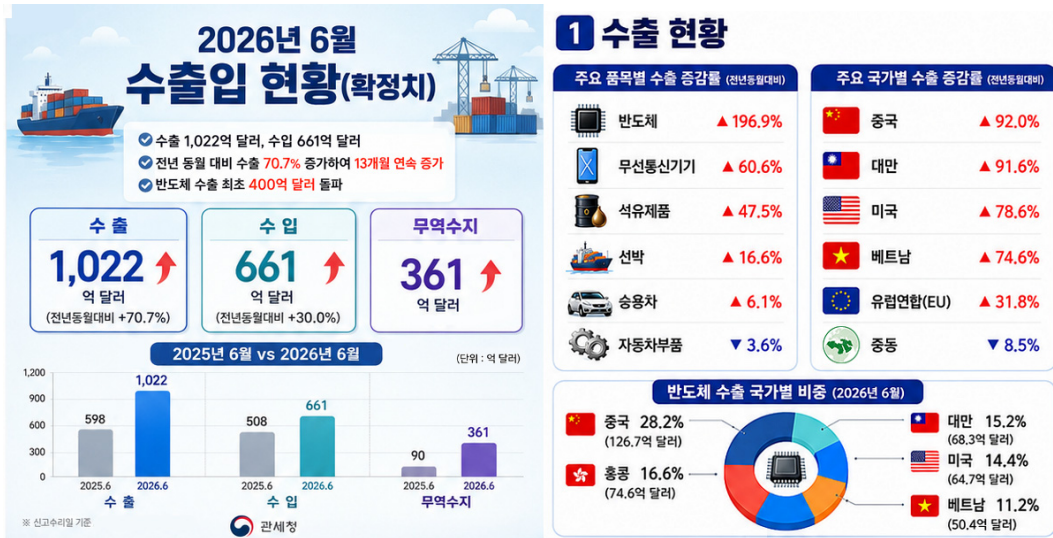
| 서준식 기자 |

6월 수출 첫 1,000억달러 돌파··· 무역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한 1,022억달러, 수입은 30.0% 증가한 661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61억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96.9% 증가한 449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섰고,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승용차(6.1%), 석유제품(47.5%), 선박(16.6%), 무선통신기기(60.6%)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3.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수출은 78.6%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중국 수출도 92.0%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처: 관세청

수입은 원유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50.3%), 메모리 반도체(146.5%), 승용차(59.8%) 수입이 늘었고, 비철금속광(18.5%), 조제식품(1.2%), 원동기(13.4%)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및 승진(2026년 7월 14일자)

관세청 차장 박 헌(朴軒)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김 정(金政)

■ 과장급 전보(2026년 7월 18일자)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 재 성(尹宰晟) 안산세관장 도 기 봉(都基鳳)

■ 과장급 전보(2026년 7월 20일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 준 성(朴俊星)	동해세관장	손 영 환(孫泳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 승 하(柳勝夏)	용당세관장	오 해 식(吳海植)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노 지 선(盧智善)	양산세관장	신 각 성(愼珪晟)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신 숙 경(愼淑敬)	마산세관장	서 경 복(徐景福)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허 범 석(許範奭)	경남남부세관장	박 권 오(朴權五)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 연 우(鄭淵宇)	수원세관장	문 병 주(文炳柱)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 병 로(姜秉輅)	목포세관장	박 노 명(朴魯明)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 시 원(朴時元)	여수세관장	정 진 우(鄭珍宇)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 창 훈(南昶煥)	제주세관장	김 기 환(金基煥)
		관세평가분류원장	오 현 진(吳錫鎭)

시선,
미국
통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가 도입됐지만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가 미국의 통상·관세 정책 변화와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2026.7.24. 임시 글로벌 관세도 만료... 새로운 국면 맞는 미국 관세정책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이 정 운(Pierce Lee) | 미국 변호사(Crowell & Moring LLP)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정책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준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추가관세 조치였다. 이른바 ‘상호관세’ 또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로 불린 조치들은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의 무역수지와 국가별 교역관계를 근거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Liberation Day’라는 표현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국가들의 높은 관세, 비관세장벽, 산업정책, 보조금, 시장접근 제한 등으로 불리한 교역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IEEPA 상호관세는 미국이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해방’돼 새로운 관세체계를 통해 교역조건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국가별 교역 불균형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IEEPA상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추가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된다 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EPA가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한계를 확인한 사건이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그 결과 IEPA를 근거로 한 관세정책의 시대는 종료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적극적 관세정책 자체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미국 통상정책은 IEPA라는 비상권한 중심의 단계에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반덤핑·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이하 'AD/CVD'), 세이프가드 등 기존 통상법 체계 안의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IEPA 관세가 없어졌으니 리스크가 줄었다”고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기존 관세정책을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어떤 추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IEPA 상호관세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IEPA는 원래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외국과 관련된 경제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전통적으로 IEPA는 제재, 자산동결, 금융거래 제한 등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목적의 경제제재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즉 특정 국가, 단체, 개인,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법적 성격이 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법률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특정 국가와의 불균형한 교역관계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IEEPA상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여러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종가세 방식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IEEPA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상 관세와 조세 부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려면 의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판결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IEEPA 관세에 따라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둘째, 향후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이용해 유사한 방식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데 법적 한계가 생겼다. 셋째,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보다 전통적인 통상법 권한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징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전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IEEPA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새로운 임시 수입부과금을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기간은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더 장기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122조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관세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비상수단에 가깝다.

행정부는 이 권한을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10%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수정 또는 의회 연장이 없는 한 해당 시점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22조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글 작성 시점(7월 13일) 기준으로는 122조 관세가 예정대로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122조 관세의 만료가 미국 추가관세 리스크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2조는 어디까지나 IEEPA 관세 종료 이후의 임시적 연결수단에 가까웠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그 이후 미국 행정부가 어떤 수단으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다.

무역법 301조의 부상과 새로운 관세 가능성

IEEPA 관세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122조 관세도 한시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향후 미국 관세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301조가 주목받고 있다.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인정되면 행정부는 추가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30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시장접근 제한, 디지털서비스세, 특정 산업정책 등 다양한 통상분쟁에서 활용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와 그 결과 부과된 대중 추가관세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아래 두 건의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1.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집행이 미흡한 국가·경제권에 대한 조사
2.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국가·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USTR은 이미 60개 경제권에 대해 301조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 중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경제권에는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이 포함된다.
- 나머지 6개 경제권인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금지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적 집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위 5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12.5%, 위 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특히 한국이 54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은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민감하다. 특정 기업이 직접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산 수입품 전반이 301조 추가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USTR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대한민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의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 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철강, 화학, 배터리, 산업소재, 전자부품, 기계류 등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122조 관세가 만료된 이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 또는 양자를 조합해 새로운 관세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세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세조치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여러 법적 근거가 중첩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본 관세율, 즉 Column 1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 수입거래에서는 Column 1 관세 외에도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AD/CVD, 세이프가드, 기타 임시 수입부과금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수입품에 둘 이상의 추가관세가 중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제품이라도 향후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우리 제품의 기본 관세율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추가관세가 적용되는지, 서로 중첩되는지, 특정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관세가 면제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이 301조 관세에서 제외되는지, 특정 추가관세가 동일 가치 부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지, 원산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이제 미국 관세를 단순한 통관비용이 아니라 공급망 전략, 가격정책, 고객계약, 리스크 배분, 세관심사 대응과 연결된 종합적 관리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특히 다음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진행 중인 301조 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한국을 직접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관세율, 적용 대상, 예외 품목, 발효일, 중첩 적용 규칙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 수출품이 어느 HTSUS(미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Code에 해당하는지, 해당 Code가 최종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존 품목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많은 추가관세 조치는 HTSUS Code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한다. 특정 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외나 제외 품목은 대체로 HTSUS Code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단순한 통관기술 문제가 아니라 추가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잘못된 HTSUS Code를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할 추가관세를 납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사후 추징과 벌금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무상 기업들이 동일한 HTSUS Code를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통관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류가 정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을 뿐, 분류 자체가 잘못돼 있을 수 있다.

셋째, 원산지 판단을 점검해야 한다. 301조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제품으로 판단되는지가 추가관세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301조 목적상 원산지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표시 원산지(marking origin)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는 301조 목적상 원산지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CBP는 멕시코에서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를 수행한 SSD(보조기억장치) 제품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상 무관세 혜택과 표시 원산지 목적상 멕시코산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301조 목적상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국산 블랭크 드라이브를 사용한 SSD는 301조 목적상 여전히 중국산으로 취급됐다.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란 특정 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이나 조립이 기존 부품 또는 반제품을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변화시켰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실질적 변형 판단은 매우 사실관계 중심적인 분석이다. 단순 조립인지, 복잡한 제조공정인지, 핵심 부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최종 제품의 기능과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재료와 핵심 부품의 원산지, 각 국가별 생산공정, 완제품의 기능 형성 과정, 공급망 문서, 제조원이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고객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추가관세 비적용을 전제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고객계약과 가격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 관세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관세율 변동 시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거래조건(Incoterms)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와 수입자(OR, Importer of Record)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처럼 관세율 변동이 잦은 상황에서는 계약상 리스크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통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관세구조가 복잡해질수록 CBP의 정보요청, 사후심사, 감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 원산지, 가격신고, 특수관계자 거래, 로열티, 지원물품, 관세환급, AD/CVD 적용 여부 등 기존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관세 추정뿐 아니라 벌금, 고객 분쟁, 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맺음말

IEEPA 관세의 종료는 미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추가관세 정책이 약화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법적 근거와 집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122조 관세는 임시적 성격이 강하고, 향후에는 301조와 232조 관세, AD/CVD, 세이프가드 등 기존 통상법상 수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와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한국을 직접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직 최종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2조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추가관세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관세를 단순한 통관비용으로 보는 접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품목분류, 원산지, 추가관세 적용 여부, 중첩 적용 규칙, 고객계약상 비용부담 구조, 통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미국 관세환경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내부의 관세·통관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맥주 해외 직구 시 관세

맥주를 해외 직접 구매(직구)할 때 자가사용인정기준과 관세·부가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려면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맥주는 제 2203.00-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203.00-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A) 30%, 주세 885.7원/리터(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는 708.5원/리터), 교육세 30%, 부가세 10%입니다.

일반적인 주류의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율

참고로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리터 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이때 관·부가세는 면세되지만,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요건 / 단백질바의 수입요건

각종 견과 및 단백질 성분 등을 혼합·조재해 초콜릿을 도포한 후
막대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개별 포장한 단백질바의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1806.32-9000호에 분류되는 '기타'에 속하는 막대 모양의 속을 채우지 않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갖추어 통관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화물 / 위험물 장치 요건

위험물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적합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해당 고시 제5조(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해 특허해야 하며, 위험물품 등과 같은 특수보세창고의 경우 같은 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특허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물 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 등에 장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 등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과 관련한 실무 사항은 관할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해 안내받기 바랍니다.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서(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마.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
- 바. 보세창고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 사.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중략>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 사업계획, 보수작업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보세창고의 요건 등) ①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상의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보관하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으로 판단한다.
2. 부지 내에 방화에 필요한 통로와 소화전이나 이를 대신할 소화기구 및 방화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소방관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3. 옥외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항목 중 7호에서 정하는 위험물만을 저장할 수 있다.
4. 발화 및 폭발성이 높은 화물을 장치하는 구역은 탄약저장소의 예에 준하여 여러 장소로 구분하여 방화용 토벽이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품 취급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 주유소, 고압선 등으로부터의 안전 거리가 유지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 중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FTA / 최빈국 특혜관세

**방글라데시산 오일[HS 제1518호(Used cooking oil)]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무관세로 수입 가능한 기간과 제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 HS 10단위로 운영되며, HS 제1518호의 세분류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제1518.00-1000호 기본관세: 8%, 최빈국 특혜관세: 0%
- HS 제1518.00-2000호 기본관세: 8%, 최빈국 특혜관세: 0%
- HS 제1518.00-9010호(사료용) 기본관세: 5%, 최빈국 특혜관세: 0%
- HS 제1518.00-9090호 기본관세: 8%, 최빈국 특혜관세: 0%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최빈국 원산지증명서 및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됐음을 입증하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34(2025.7.2.) 대상결정

최 천 식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

I. 머리말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납세자에게 사후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 조항이다. 그러나 물품 특성상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확정가격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FTA 사후적용 신청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조심2025관0034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은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적용된 액화천연가스(LNG)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기산일이 법문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인지, 아니면 과세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확정가격신고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룬 심판사례다. 다음은 본 사안의 처분 개요와 당사자들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관세법」상 수입 관련 3대 신고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본 결정의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23.11.13.부터 2023.12.7.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 4건으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호주인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율(2%)을 적용해 수입신고했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4.12.24. 처분청에 「FTA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에 한·ASEAN FTA 및 한·호주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처분청은 2025.1.8.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III. 당사자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수입신고 수리일과 확정가격신고일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이 적용돼야 한다. 청구법인은 LNG 수송선이 입항하기 직전 LNG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입항 후 검수가 완료되면 세액정정신고를 하며, 정정된 세액에 따라 매월 말 관세를 납부한다.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된 LNG의 원산지증명서는 통상적으로 LNG 수입통관 이후 수개월 후에 발급되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세관 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기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다.

한편, LNG 대금·수송선 운임 등 LNG 수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확정되기까지 장기간(2~4년)이 소요되므로 수입신고 시 잠정적으로 과세가격 신고 즉, 잠정가격신고를 했다가 관련 수입 비용이 확정되면 과세가격이 변경되므로 그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잠정가격신고를 한 건은 확정가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3.11.13.부터 2023.12.7.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및 잠정가격신고를 했고, 검수가 완료된 후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2023.11.20.부터 2023.12.21.까지 세액정정신고를 하고 정정된 세액을 납부했다.

청구법인은 2024.12.24.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함께 경정을 청구했는데, 쟁점물품은 아직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25.1.8. 이를 거부했다. 통상적인 경우 수입신고·가격신고·납세신고는 동시에 이뤄져 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인바, 수입신고·가격신고·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에서 수입신고는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고,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는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가격신고는 통관의 적정보다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FTA관세특례법」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통관의 적정정보다는 관세율의 적용 및 관세수입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가 이뤄져 '수입신고일'과 '확정가격신고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의 기산일 역시 '수입신고일'이 아닌 '확정가격신고일'이 돼야 한다. 나아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가 이뤄진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서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은 2019.1.28. 잠정가격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관세제도과-78).

이와 같이 관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되는 기간의 기산점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세법」의 체계와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일과 가격신고일이 일치하는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수입신고일과 가격신고일이 불일치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 불비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의견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법문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연장 등의 단서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기산일은 법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이 되어야 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확정가격신고일로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조세 법규를 확장·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조심 2018관42, 2018.8.29. 및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298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입신고번호 ○○○ 등 76건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해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2023.11.29.부터 2024.5.14.까지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2024.11.13.~2024.12.7.)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2) 협정관세 적용은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통관의 적정성보다는 관세율의 적용 및 관세수입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고,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나 경정청구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하고 있으므로 「FTA관세특례법」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도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추정세액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과세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써 과세가격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다른 요소(예: 세율)가 변동될 때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무관한 사유(예: 세율)로 세액이 변동될 때는 일반적인 세액 정정 절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나 경정청

구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최초 납세신고일)이 돼야 한다(조심 2016관221, 2017.3.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은 과세가격의 변동과는 관련이 없는 ‘세율’에 관한 것이므로 잠정가격신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기재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 착오로 부과처분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나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일(최초 납세신고일)이 돼야 하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의 기산일도 수입신고 수리일이 돼야 한다.

IV. 조세심판원 판단

1. 쟁점 사항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 결정 요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 건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확정가격신고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같은 뜻임),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잠정 및 확정가격 신고는 세율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확장 또는 연장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 평석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활용된 특수한 수입물품의 경우,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법문상의 수입신고 수리일에서 확정가격신고일로 변경해 해석할 수

있는지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수입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입 관련 3대 신고제도(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의 고유한 취지와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관세법」상 수입 관련 3대 신고제도의 취지

수입자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이행하는 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는 통상 하나의 신고서식(수입신고서)을 통해 동시에 이뤄지므로 일반 유통업체나 납세자는 이를 단일한 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관세행정상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목적과 취지를 가진 행위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신고는 수입물품의 적법성 통제 및 통관의 적정성 확보(안전·보건·사회규제)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신고는 신고납부제도에 따른 자발적 세액 확정 및 제정수입 확보에 그 취지가 있고, 가격신고는 과세가격 결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검증 기반 마련에 그 취지가 있다.

1) 수입(물품)신고의 취지: 통관 적정성 확보 및 물품의 법적 요건 확인

법적 근거 조항은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다.¹⁾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통관’의 핵심 절차로서, 대상 물품이 국내 법령(예: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세관장 확인 대상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보건성, 규격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는 ‘물품 중심적 통제’에 그 취지가 있다. 즉, 사회안전망을 저해하는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대법원 역시 수입신고는 물품 자체의 적법 통관을 위한 것으로서 관세 확보를 위한 납세신고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납세신고의 취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한 세액의 자발적 확정

법적 근거 조항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다.²⁾ 현대 관세행정은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하는 부과고지제도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사 수입물품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가격×관세율’의 공식을 적용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다. 이는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

1) 수입신고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 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등을 신고해야 한다.

2) 납세신고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국가 재정수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

3) 가격신고의 취지: 과세가격 결정의 정당성 검증 및 과세자료 수집

법적 근거 조항은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다.³⁾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과세가격(Value)’의 산출 근거를 세관장에게 상세히 소명하는 절차다.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특수관계 여부, 간접지급금액 및 가산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세관장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당하게 도출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과세 기반 자료의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

2.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성격과 효력의 범위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가격신고를 할 때 거래 관행[원유, 곡물 등 1차 상품의 사후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 연동 등]이나 계약 특성상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선 잠정적인 가격으로 납세신고를 해 물품을 신속히 통관시키고, 향후 가격이 확정됐을 때 정산(확정가격신고)하도록 하는 ‘가격(Value)에 특화된 예외 제도’다.⁴⁾ 이 제도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가 이뤄지면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이연되고, 경정청구 기간 역시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기산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의 이연(移延)은 오직 ‘과세가격의 불확정성’에서 기인한 세액 변동 요인(즉, 과세표준 변경)에만 국한된다. 과세가격의 변동과 무관한 다른 세액 결정 요소, 예컨대 감면 신청의 누락이나 관세율 적용의 오류 등은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구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3.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의 체계와 성격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

3) 가격신고를 할 때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4)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①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②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액 환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특혜적 조항이다.

나아가 해당 조 제2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라는 일반적인 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 처분을 통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정신고를 한 날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과세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다. 이처럼 「FTA관세특례법」은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연장 사유를 ‘일반적 사후적용(1년)’과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특례(3개월)’로 엄격히 제한해 열거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신고와 같은 과세가격의 변동 사유는 기한 연장의 예외 사유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4. 대상결정의 타당성 검토

앞서 고찰한 수입 관련 3대 신고제도의 고유한 취지와 FTA 사후적용 제도의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종합해 볼 때, 대상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타당성 근거를 세 가지 논거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세율’의 영역이며, 잠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영역으로 두 제도의 법적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상이하다. 관세의 산출 공식은 ‘과세가격(과세표준)×관세율=관세액’으로 결정된다.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이 공식 중 전자인 ‘과세가격’이 수입시점에 정해지지 않아 사후에 정산하기 위해 마련된 과세표준 전용 예외 규정이다. 반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후자인 ‘관세율’을 특혜세율(0% 등)로 변경·적용받기 위한 절차다. 즉, 정품의 가격이 잠정 상태이든 확정 상태이든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행위는 가격의 변동 여부와 논리적으로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불확정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근거로 삼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율 적용 기한(사후적용 신청기한)까지 연장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불과하다.

둘째,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문 엄격 해석 원칙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자의적인 기산일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법률에 규정된 문언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특히 조세의 감면이나 특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의거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FTA관세특례법」 제9

조 제1항은 사후적용의 기산일을 명백하게 ‘수입신고 수리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신고 물품에 대한 예외 기산일을 별도로 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는 것은 사법(司法)이 입법(立法)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FTA관세특례법」이 규정한 기존 특례 조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유를 법적 근거 없이 우대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을 이미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처분과 같이 납세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소급과세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분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라는 추가 기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 그 예다. 이처럼 관세법령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열거(제한적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만일 잠정가격신고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사후적용 기한을 무한정 이연해 준다면, 법률에 명시된 품목분류 변경 특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수입신고를 이행하며 1년의 기한을 준수하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

VI. 결론

조세심판원의 대상 결정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가 각각 지닌 고유한 행정적·법적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과세가격의 불확정을 보완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세율 영역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결정이다. 수입물품의 신고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형식적 유사성에 함몰되지 않고 각 신고 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성 원칙을 고수한 본 결정은 향후 잠정가격신고를 빈번히 활용하는 1차 산업 및 에너지 수입기업들에게 FTA 사후적용 기한 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AI 시대의 혁명 '광 네트워크'의 이해와 연관 물품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서울세관 분석실

I. 개요

2026년 최고의 관심사는 AI다. 초기의 AI는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현재의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AI가 점점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연산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왜 네트워크가 발전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최근 AI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구리 기반의 백플레인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와 발열 문제에 부딪혔다. 전송 속도를 높이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식히려면 또 다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이디어가 구리를 광 부품으로 다 바꾸자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코-패키지드 옵틱스(CPO, co-packaged optics)다. CPO는 구리 회로 없이 프로세서와 광 부품을 하나의 기판 위에 붙여 패키징하기 때문에 프로세서와 광 부품까지의 거리가 짧아진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높아진다. 서버 내부에 광학 인터커넥트, 특히 CPO를 도입하면 데이터 전송에 드는 전력을 최대 30~5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CPO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번 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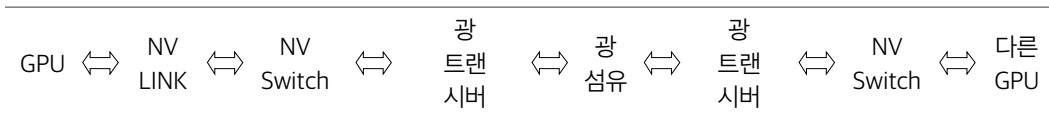
II. 광 네트워크

1. 광 네트워크란?

광통신의 발전 과정은 사용자 가까이로 이동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화망과 국가 간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광통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백본망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에는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됐고, 2010년대에는 같은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랙과 랙을 연결하는 수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리고 현재 AI 시대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클러스터 간 통신을 위해 광통신이 필수 기술이 됐다.

광통신은 전기신호를 레이저를 이용해 빛으로 변환한 후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빛을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빛은 전기신호에 비해 손실이 매우 적고 전자파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매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보다 훨씬 큰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광통신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통신에 매우 적합하다. 과거에는 초당 수 기가비트 수준의 통신이면 충분했지만, 현재 AI 데이터센터에서는 400Gbps, 800Gbps, 나아가 1.6Tbps 이상의 전송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고속 신호를 수 미터 이상 전송하려면 신호 증폭기, 재생 장치, 고급 PCB 소재 등이 필요하며 전력 소모의 증가, 전자파 간섭과 발열 문제도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다.

● 광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과정 ●



2. 광 네트워크 이해를 위한 용어 설명

1) GPU

GPU는 다양한 장치에서 컴퓨터 그래픽 및 이미지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전자 회로다. GPU는 수학적 계산을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다. 따라서 머신러닝(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 기술의 필수 원동력이 된다.

GPU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와 비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CPU와 GPU의 가장 큰 차이점은 CPU가 더 적은 코어를 사용하고 선형적인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GPU는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코어를 갖추고 있어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빠른 처리 능력을 발휘한다. GPU 이전의 구세대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GPU의 병렬 처리 기능은 많은 계산 또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구형 컴퓨터의 CPU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 CPU와 GPU(ALU 계산 담당) ●



2) 광트랜시버

광트랜시버(Optical Transceiver)는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서로 변환하는 장치로 현대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그대로 Transmitter(송신기)와 Receiver(수신기)의 기능을 하나의 모듈에 통합한 장치다. 컴퓨터나 스위치, 서버 내부에서는 데이터가 전기신호 형태로 처리되지만 장거리 또는 초고속 통신에서는 전기신호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이 필요하다. 이때 광트랜시버는 전기와 빛을 연결하는 변환기 역할을 수행한다.

광트랜시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전기통신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전기신호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감쇠가 발생하고 전자파 간섭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아질수록 신호 손실과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과거에는 수 기가비트 수준의 통신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AI 데이터센터에서는 400Gbps, 800Gbps, 나아가 1.6Tbps 이상의 초고속 통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기 케이블만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어렵기 때문에 광통신이 필수적이며, 광트랜시버는 그 중심에 위치한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주로 스위치와 서버, 또는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AI 랙 내부에서는 GPU와 NVSwitch가 PCB와 미드플레

인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러 랙을 연결할 때는 거리가 길어지고 전송 속도가 높아지므로 광통신이 사용된다. 이때 네트워크 스위치의 포트에 장착된 광트랜시버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광섬유를 통해 다른 랙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3) 실리콘 포토닉스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는 실리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 빛을 생성하고, 제어하며, 전송하는 광집적 기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전자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던 기존 반도체 기술과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기술을 하나의 칩 위에 통합하려는 기술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초고속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기본 원리는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광회로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광통신 시스템에서는 레이저, 광변조기, 광도파로, 광검출기 등이 각각 별도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반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칩 위에 집적해 크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확립된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공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력 효율과 대역폭 때문이다. 전기신호는 전송 속도가 높아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이 증가하지만, 광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광신호는 전자파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은 AI 데이터센터처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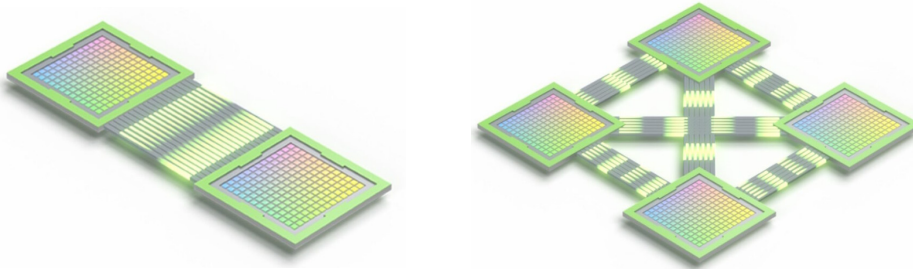
4) NVLink

NVLink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초고속 GPU 상호 연결 기술로 여러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협력해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 기술이다. AI 학습, 고성능 컴퓨팅,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같은 분야에서는 단일 GPU의 연산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GPU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GPU 간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VLink가 개발됐다.

NVLink의 핵심 목적은 GPU와 GPU 사이의 통신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GPU는 단순히 자신의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GPU의 메모리 공간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대규모 AI 모델을 여러 GPU에 분산해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GPU 메모리에 담을 수 없는

초대형 모델도 여러 GPU가 협력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NVLink는 GPU 클러스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산 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GPU와 GPU를 연결하는 NVLink ●



5) NVSwitch

NVSwitch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고성능 스위치 칩으로 여러 개의 GPU를 초고속으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NVLink가 GPU와 GPU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 통신 기술이라면 NVSwitch는 수많은 GPU 간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중계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AI 데이터센터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는 NVSwitch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NVSwitch의 역할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이더넷 스위치와 유사하다. 네트워크 스위치가 여러 서버 사이의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듯이 NVSwitch는 여러 GPU 사이의 데이터를 최적의 경로로 전달한다. GPU는 NVLink를 통해 NVSwitch에 연결되며, NVSwitch는 필요한 데이터를 목적지 GPU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모든 GPU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마치 완전 연결된 것과 같은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NVLink와 NVSwitch의 개요 및 발전 과정 ●

1단계	GPU-GPU 연결	GPU-NVLink- GPU
2단계	GPU-- GPU--- ---NVSwitch --- GPU GPU-- GPU--	GPU가 많아지면서 NVSwitch 도입
3단계	AI 팩토리 시대(예: NVL72)	GPU72개를 하나의 랙에서 연결

6) 인피니밴드&이더넷

인피니밴드(InfiniBand)와 이더넷(Ethernet)은 데이터센터에서 서버와 서버, 랙과 랙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설계 철학과 활용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은 수천 개의 GPU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더넷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가정의 인터넷 공유기부터 기업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이더넷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이더넷은 표준화가 잘 돼 있고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가 서로 호환되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발전을 거치면서 안정성과 확장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인피니밴드는 고성능 컴퓨팅과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위해 개발된 전문 네트워크 기술이다. 일반적인 기업 네트워크보다 훨씬 낮은 지연시간과 높은 데이터 처리 성능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슈퍼컴퓨터, 과학 계산, AI 학습과 같이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환경에서 강점이 있다.

7) CPO

CPO(Co-Packaged Optics, 공동 패키징 광학)는 광통신 장치와 네트워크 스위치 칩을 하나의 패키지 또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통합하는 차세대 광통신 기술이다. 기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는 스위치 칩과 광트랜시버가 서로 분리돼 있으며 스위치에서 생성된 전기신호가 PCB와 커넥터를 거쳐 광트랜시버로 전달된 후 빛으로 변환된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구조는 전력 소모와 신호 손실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CP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위치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 집적회로)이 데이터를 처리한 후 전기신호를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을 통해 광트랜시버로 전달한다. 광트랜시버는 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광섬유를 통해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스위치 칩과 광트랜시버 사이에는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는 전기 배선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400Gbps, 800Gbps, 1.6Tbps급 통신 환경에서는 이 전기 구간에서 상당한 전력 소모와 신호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CPO다. CPO는 광트랜시버 기능을 스위치 칩 바로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하나의 패키지 내부에 통합한다. CPO의 핵심 구성요소는 스위치 ASIC, 광엔진, 레이저, 광섬유 인터페이스다. 스위치 ASIC이 데이터를 처리하면 곧바로 인접한

광엔진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한다. 이후 광섬유를 통해 다른 스위치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기존 광트랜시버 구조와 비교하면 전기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극적으로 감소하며, 이에 따라 신호 무결성과 전력 효율이 개선된다.

참고로 실리콘 포토닉스는 CPO 구현의 중요한 기반 기술 중 하나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하면 광변조기, 광도파로, 광검출기 등의 광소자를 반도체 공정을 통해 집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엔진의 크기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CPO와 실리콘 포토닉스를 함께 차세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3. 미래 광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

오늘날 AI 데이터센터는 여러 계층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가장 안쪽에서는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가 전기신호로 연결되고 여러 GPU는 NVLink를 통해 초고속으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NVSwitch가 그 사이의 트래픽을 관리한다. GPU와 NVSwitch는 같은 랙 내부에서 미드플레인과 초고다층 PCB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러 랙을 연결할 때는 전기신호의 한계 때문에 광통신이 사용된다. 이때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나 세계 최초의 AI 이더넷 네트워킹 플랫폼인 Spectrum-X 같은 네트워크가 사용되며 광모듈과 광섬유를 통해 랙과 랙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결국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랙이 연결돼 하나의 거대한 AI 데이터센터 즉 AI Factory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광통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의 데이터센터는 CPU 중심이었기 때문에 통신량보다 연산 능력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현재의 AI 데이터센터는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하나의 모델을 학습해야 하므로 GPU 간 데이터 교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통신은 점점 더 칩 가까이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는 스위치 칩과 광 모듈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광엔진을 스위치 칩과 함께 패키지 내부에 탑재하는 CPO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기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해 전력 소모와 신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 스케일 업(Scale-Up)

스케일 업은 수직적 확장으로 서버 한 대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단일 랙 내부에서 GPU와 CPU를 더 촘촘하게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만든다. 메모리 공유와 초저지연 성능이 중요하며 구리선에서 광 연결구조로의 전환이 핵심과제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주로 GPU의 수를 늘리고, GPU 간 연결 성능을 강화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PU 한 개가 초당 1의 연산 성능을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단순히 GPU를 8개 연결하면 이론적으로는 8배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신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으면 성능 향상이 제한된다. 따라서 스케일 업의 핵심은 단순히 GPU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GPU 간 통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2) 스케일 아웃(Scale-Out)

스케일 업과 반대되는 개념은 스케일 아웃이다. 스케일 업이 하나의 시스템 내부에서 GPU 수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스케일 아웃은 여러 개의 서버나 랙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체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사용된다. 먼저 NVLink와 NVSwitch를 이용해 하나의 랙 내부에서 스케일 업을 구현하고 이후 Spectrum-X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랙을 연결해 스케일 아웃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데이터센터를 살펴보면, 하나의 NVL72 랙 내부에서는 NVLink와 NVSwitch가 GPU들을 연결해 스케일 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여러 NVL72 랙은 인피니밴드 또는 Spectrum-X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스케일 아웃 구조를 형성한다. 즉, 현대 AI 데이터센터는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이 동시에 적용된 계층형 구조라고 볼 수 있다.

3) 스케일 어크로스(Scale Across)

스케일 어크로스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통합해 데이터센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아키텍처 철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하나의 서버 내부에서 성능을 확장하는 스케일 업과 여러 서버 및 랙을 연결해 성능을 확장하는 스케일 아웃이 명확히 구분됐지만, 최근 AI 모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터로 통합하려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를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스케일 업은 하나의 시스템 내부에 더 많은 GPU를 배치하고 NVLink와 NVSwitch를 통해 이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여러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동작할 수 있다. 반면 스케일 아웃은 여러 서버나 랙을 인피니밴드 또는 이더넷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체 시스템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서버 내부 성능과 데이터센터 전체 성능을 별도로 관리했지만, 최신 AI 환경에서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협력해야 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AI 모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수천 개 이상의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특정 GPU가 어느 랙에 있는지, 또는 어느 서버에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체 GPU 자원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플랫폼처럼 동작하는 것이다. 스케일 어크로스는 바로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III. 경합세번

다음은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물품들의 품목분류 사례다. 과거에 통화에 전용되던 핸드폰에 사진기, MP3, 컴퓨터의 기능이 들어오면서 품목분류에 고민했던 것처럼 **미래의 네트워크 장비는 단순히 연결의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자체에 연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런 경향을 유의 깊게 보면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1. 커넥트 X-어댑터(CONNEXT X-ADAPTER)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돼 다수의 GPU 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해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제8471호에 분류할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할지 여부

2. 이더넷(Ethernet) 어댑터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어댑터로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로 봐 제8544호에 분류할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할지 여부

3. MRV 336

LED 컨트롤러와 LAN 케이블로 연결돼 LED 컨트롤러에서 변조돼 전송된 영상신호와 컨트롤 신호 등 각종 신호를 입력받아 받아 다시 복조해 각종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 신호를 LED 모듈로 전송하고, 다시 LED 모듈에서 전송된 데이터 신호를 LAN 신호로 변조해 전송하는 기기를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봐 제8517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제어반’으로 봐 제8537호에 분류할지,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봐 제8543호로 분류할지 여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000	사운드카드	양허 0%
		0000	비디오 카드	양허 0%
		9000	기타	양허 0%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 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 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	양허 0%
	6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양허 0%
	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양허 0%
		20	그 밖의 송신기기(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교환기 및 라우팅 기기	
		90	기타	
		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양허 0%
		9020	그 밖의 유선통신용	양허 0%
		9030	그 밖의 무선통신용	양허 0%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그 밖의 기반 (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0	전기제어용의 것	
		5010	수치 제어반	기본 8%
		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기본 8%
		5090	기타	기본 8%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 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9090	기타의 기타	기본 8%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20	플라스틱 절연전선	
		2010	전기통신용	양허 0%

IV.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8471호 해설서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처리는 하나나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즉, 업무처리 중 수동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 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지만 그 밖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일체형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이 있다.

위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E)부분 참조].

2.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

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제8517호 해설서

(II)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A) 기지국(base station)

가장 일반적인 기지국의 형태는 셀룰러 전화기로부터나 그 밖의 무선네트워크로 무선파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셀룰러 통신망의 것이다. 모든 기지국은 지리적인 구역(셀)을 커버한다.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권은 지체없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자동 전달된다.

(B) 엔트리폰 시스템(entry-phone system)

이 시스템은 대개 전화핸드세트와 키패드나 확성기·마이크로폰(microphone)·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원하는 키를 눌러서 입주자를 호출하여 대화할 수 있다.

(C) 비디오폰(videophone)

... <중략> ...

(D) 제8443호의 팩시밀리(facsimile) 기기를 제외한 전신 기기

... <중략> ...

(E) 전화용(telephonic)이나 전신용(telegraphic) 교환기(switching apparatus)

... <중략>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 <중략> ...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도시지역 통신망(MAN, Metropolitan Area Network)·원거리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router)·브리지(bridge)·허브(hub)·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

(6) 펄스 다이얼 신호(pulse dialled signal)를 음조 신호(tone signal)로 변환하는 펄스 음조 변환기(pulse to tone converter)

3.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제8537호 해설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 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演算: 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4. 관세율표 제8543호의 내용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V. 품목분류

1. 커넥트 X-어댑터

결정 세번	제8517.62-9010호
물품 개요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돼 다수의 GPU 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해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 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물품 설명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GPU 데이터를 다른 GPU로 통신규격(인피니밴드*)을 변환해 초고속 전송 * 인피니밴드: 고성능 컴퓨팅, 슈퍼 컴퓨터, 기업용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방식의 통신 연결 방식 ② 포트: 데이터 전송용 광케이블 연결 포트 ③ PCI 인터페이스: 서버 내부의 GPU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④ LED: 광케이블 연결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 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결정 사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CPU와 GPU, GPU와 DPU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속화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보안 프로토콜, 특수 응용프로그램 실행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71호의 단위기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G) 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도시지역 통신망(MAN, Metropolitan Area Network)·원거리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 (3) 라우터(router)·브리지(bridge)·허브(hub)·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서버에 장착돼 GPU 데이터를 통신 규격(인피니밴드)에 맞게 수신, 변환, 전송하는 물품으로 GPU 데이터를 전송해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에 결합되거나 연결돼 사용되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10호에 분류함.

2. 이더넷 어댑터

결정 세번	제8517.62-902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플라스틱 절연전선 양단에 RJ45 커넥터(Ethernet Controller 내장, 네트워크와 연결)와 USB 3.0 단자(노트북과 연결)가 부착된 물품(길이: 179.1mm, 무게: 28.2g) (적용 모델) 삼성노트북 M(모델명: NT110S1J) ○ 기능 및 용도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어댑터로 유선 LAN 카드 역할을 수행 * RJ45 커넥터에 내장된 Ethernet Controller가 유선 LAN 카드 역할 수행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은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유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RJ45 커넥터에 내장된 EtherNet Controller를 통해 데이터를 통신규격에 맞도록 변환한 후 송신 또는 수신하는 물품으로, 단순히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절기절연도체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의 ‘그 밖의 절기절연도체’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 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어댑터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3. MRV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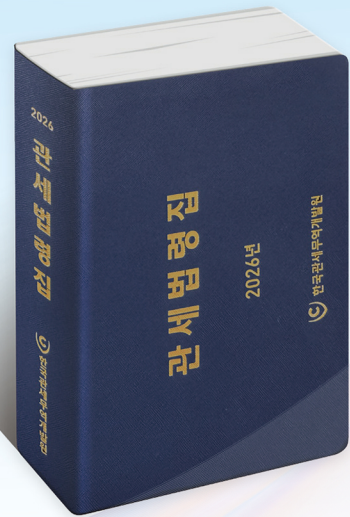
결정 세번	제8517.62호
물품 개요	LED 컨트롤러와 LAN 케이블로 연결돼 LED 컨트롤러에서 변조돼 전송된 영상신호와 컨트롤 신호 등 각종 신호를 입력받아 다시 복조해 각종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 신호를 LED 모듈로 전송하고, 다시 LED 모듈에서 전송된 데이터 신호를 LAN 신호로 변조해 전송하는 기기
물품 설명	○ 블록다이아그램 설명 1) TX/RX Ethernet PHY: RGMII 신호와 PAM5 신호를 상호 변환해 이더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환 2) Display data TO LED Control data Converter Logic: 이더넷을 통해 들어온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LED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해 각각의 LED를 제어하도록 여러 포트를 통해 신호를 전송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밖의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 간 어댑터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LED 컨트롤러에서 변조돼 입력된 영상신호와 컨트롤 신호 등 각종 신호를 복조하는 기기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에 부합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LED 컨트롤러에서 보낸 변조된 신호를 복조 및 데이터 신호로 변환해 LED 모듈에 전송하고, 다시 LED 모듈에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LAN 신호로 변조해 전송하는 ‘기타의 신호변환기’에 해당하므로 제8517.62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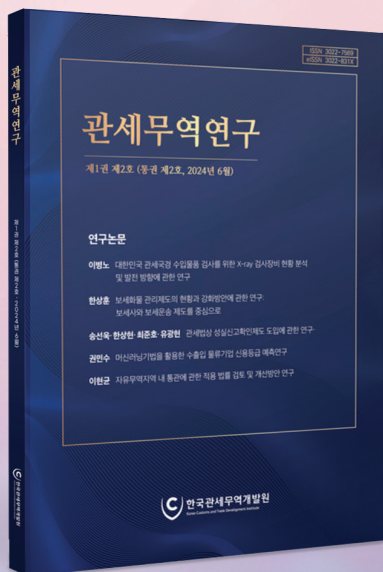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